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재누69 취득세일부환급청구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5088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2누104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0.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2011. 7.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경정청구(2011. 7. 1.에 한 13,207,42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중 8,6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4.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부산 북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87,500,000원에 매수하고, B이 그 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 위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를 신고하려다가 피고측에서 위 매매대금액 187,5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87,118,226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에 따른 신고, 납부서를 교부하자 위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취득세 13,207,4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7. 13.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위 매매대금액(이하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8. 이 사건 상가는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방법원은 2012. 2. 17. "이 사건 실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1구합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2. 3. 9.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7. 6.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2누104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2. 7.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2. 7. 19.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2.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두16138 판결). 위 판결은 2012.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도인과 중개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증거능력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상소기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2. 7.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2012. 10. 15.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7. 5. 17.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김종기

판사 구자헌